

제 192회 영등포구의회
2015년도 제2차 정례회

『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
영등포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
지원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【영등포구청장 제출】



2015. 12. 9.

社 會 建 設 委 員 會
專 門 委 員

**『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
영등포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
지원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』
檢 討 報 告**

1. 경 과

의안 제107호로 2015년 11월 12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
11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
정한 용어를 인용하였거나 자격을 부여한 현행 5개의 자치법규에
대해 일괄 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일괄 개정대상 조례

-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
요양보험료 지원조례 등 총 5개 조례

나. 주요 개정사항

- 수급권자를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로 변경
- 차상위계층이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퍼센트 이하인 자로 변경

4. 참고사항

가. 관련 법령
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7조(급여의 종류)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」 제3조(차상위계층)

나. 예산조치 : 별도 조치 필요 없음.

다. 입법예고 (2015. 10. 1 ~ 10. 21) : 의견 없음.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개정에 따라 법령상의 수급권자, 차상위계층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는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임.

○ 일괄 개정대상 조례는

-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」
-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」
-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」
-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, 수집·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」
-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」 등 총 5개 조례임.

○ 주요 개정내용은

-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」에서는 대상자를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5조의 수급권자에 해당되지 않는 차상위계층에서 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되지 않는 차상위계층으로 변경하고, 법 시행령 제3조의 개정에 따라 차상위계층의 정의를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00분의 120 이하인 자를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1)중위소득 50% 이하인 사람으로 변경함.

1) 통계청이 공표하는 통계자료의 가구 경상소득(근로·사업·재산·이전 소득을 합산한 소득)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,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를 반영하여 가구규모별로 산정한 소득

- 그 외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, 수집·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」 등 4개의 조례는 수수료감면 및 면제대상자 중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5조 규정의 수급권자를 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로 변경함.
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이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생계를 보장함으로써 빈곤을 완화하고 자립을 지원해 왔으나,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는 각종 급여가 지급되는 반면 탈수급의 경우 지원이 전무한 상황이 발생하는 등 현행 제도의 한계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이에 법을 개정함에 따라 급여수급권자의 범위를 급여의 종류별로 별도로 규정하고 맞춤형 급여체계를 실시함.
- 따라서 이 조례안은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서 정한 수급(권)자, 차상위계층 등의 용어를 인용하였거나 자격을 부여한 총 5개의 현행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수수료 면제·감면 및 지원 대상자를 명확하게 정비하는 것으로 사료됨.

관 련 법 령

■ 『국민기초생활보장법』

제7조(급여의 종류) ①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생계급여
2. 주거급여
3. 의료급여
4. 교육급여
5. 해산급여(解産給與)
6. 장제급여(葬祭給與)
7. 자활급여

②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는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. <개정 2014.12.30.>

③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(이하 "차상위자"라 한다)에 대한 급여는 보장기관이 차상위자의 가구별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,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할 수 있다. 이 경우 차상위자에 대한 급여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[대통령령으로 정한다](#).

④ 삭제 <2014.12.30.> [전문개정 2012.2.1.]

제6조의2(기준 중위소득의 산정) ① 기준 중위소득은 「통계법」 제27조에 따라 통계청이 공표하는 통계자료의 가구 경상소득(근로소득, 사업소득, 재산소득, 이 전소득을 합산한 소득을 말한다)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, 가구 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하여 가구규모별로 산정한다.

② 그 밖에 가구규모별 소득수준 반영 방법 등 기준 중위소득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[제20조제2항](#)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14.12.30.]

제6조의3(소득인정액의 산정) ① [제2조제9호](#)에 따른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은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도 불구하고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

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다음 각 호의 소득을 합한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서 장애·질병·양육 등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,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,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요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하여 산정한다.

1. 근로소득
2. 사업소득
3. 재산소득
4. 이전소득

② [제2조](#)제9호에 따른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개별가구의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(기초생활의 유지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산액을 말한다) 및 부채를 공제한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정한다. 이 경우 소득으로 환산하는 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일반재산(금융재산 및 자동차를 제외한 재산을 말한다)
2. 금융재산
3. 자동차

③ 실제소득,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범위·기준 등은 [대통령령으로 정한다](#).

[본조신설 2014.12.30.]

제12조의3(의료급여) ① 의료급여는 수급자에게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각종 검사 및 치료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.

②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,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[제20조제2항](#)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(이하 이 항에서 "의료급여 선정기준"이라 한다)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. 이 경우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.

③ 의료급여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에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14.12.30.]

■ 『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』

제3조(차상위계층) [법 제2조](#)제10호에서 "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"이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

한다.

[전문개정 2015.4.20.]

[제3조의2에서 이동, 종전 제3조는 제5조로 이동 <2015.4.20.>]

■ 『국민건강보험법』

제69조(보험료) ① 공단은 건강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총당하기 위하여 [제77조](#)에 따른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한다. 다만,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에는 그 달부터 징수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할 때 가입자의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는 변동되기 전의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. 다만, 가입자의 자격이 매월 1일에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.

④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.

1. 보수월액보험료: [제70조](#)에 따라 산정한 보수월액에 [제73조제1항](#)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

2. 소득월액보험료: [제71조](#)에 따라 산정한 소득월액에 [제73조제1항](#)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의 100분의 50을 곱하여 얻은 금액

⑤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세대 단위로 산정하되,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은 [제72조](#)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부과점수에 [제73조제3항](#)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.